## 대북삐라 살포 제지에 대한 법적근거(대법원 판례)

자주평등통일0615

일각에서는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속하므로 정부가 나서서 제지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6년 3월 29일 박근혜 정권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한 데 대해 '적법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1항과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을 규정하는 민법 제761조 2항에 따라 국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대법원은 "모든 국민은 헌법 제21조 1항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만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 적인 것이 아니고 국가안 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 국가가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라고도 밝혔다. 이미 대법원이 "대북전단 살포는 무제한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났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이후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직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서 대북전단 살포를 용인하고 있다'는 뜻처럼 들리는 설명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 이미 대법원 판례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이미 법적 근거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미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도의 미비'를 탓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 dc official App